

[X.]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7-라장
금융서비스**

**제7라.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7-가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7-나장(투자)은 이러한 장들 또는 이러한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7가.10조(혜택의 부인), 제7나.7조(대우의 최소기준), 제7나.9조(수용 및 보상), 제7나.10조(송금), 제7나.11조(대위변제), 제7나.13조(혜택의 부인), 제7나.14조(규제조치), 제7나.15조(투자 및 환경) 및 제7나.17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은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7-나장(투자)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7나.9조(수용 및 보상), 제7나.10조(송금), 제7나.13조(혜택의 부인) 및 제7나.17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7가.9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7라.6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금융서비스의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장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7라.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영국 국왕의 정부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또는

다.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¹

기준이란 개정의정서가 발효하는 날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

¹ 기업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그 당사국 내 기업의 관련 상황에 대한 사안별 종합 검토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²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시장인프라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해당 시스템의 운영자 포함)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급,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밖의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또는 기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그리고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²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은 영국의 법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도록 인가를 받은 영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 또는 지점을 포함한다.

- 2)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3) 금융리스
- 4)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5) 보증 및 약정
- 6)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가)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 나) 외환
 -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 라)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마) 양도성 증권, 또는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8) 자금중개업

-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10)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11)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위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 설비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를 말하나, 금융시장인프라의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장치나 금융시장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인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투자란 제7나.2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이 규제 자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7나.2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7-나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³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또는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자국의 법에 따른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영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않지만, 다른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투자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원 또는 자본을 이전하거나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경우, 투자를 “하고자 시도” 하는 투자자로 양해한다.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 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을 말하며,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이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영국의 경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스를 말하고, 한국의 경우, “지역 정부”는 적용 가능하지 않다.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제7라.3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운영, 영업, 경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운영, 영업, 경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7라.6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7라.4조 최혜국대우^{4 5}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7라.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7-나장(투자)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은 포함하지 않는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체결한 다른 국제 협정에서의 실체적 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 조에 언급된 “대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조치는 그 대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조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제7라.6조

국경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7라-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정의 나호에 정의된 국경 간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약속은 그 당사국에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국 영역에서 구매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3.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

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라.7조 신금융서비스⁶

1. 각 당사국은 법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지 않고,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⁷

2. 제7라.5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관련 규제기관의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7라.8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가.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⁶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할 때 새로운 규정 또는 그 밖의 하위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 정보

제7라.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자국의 국민,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7라.10조
비합치 조치

1. 제7라.3조부터 제7라.6조까지 그리고 제7라.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II의 자국의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 2) 부속서 III의 자국의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아래 시점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 1) 제7라.3조, 제7라.4조, 제7라.5조 또는 제7라.9조에 대해서는, 그 개

정 직전, 또는

- 2) 제7라.6조에 대해서는, 그 비합치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라. 부속서 III의 자국의 유보목록 제2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비합치 조치

2. 제7나.5조(내국민 대우), 제7나.6조(최혜국 대우), 제7나.4조(시장접근), 제7가.3조(내국민 대우), 제7가.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7가.5조(시장접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의 유보목록 유보항목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규정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7라.3조부터 제7라.6조까지 또는 제7라.9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3. 당사국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 후, 부속서 III의 자국의 유보목록 제2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도,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발효된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할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도 채택하지 않는다.

4. 가. 제7라.3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그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7라.4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그로부터의 이탈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7라.11조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가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장(무역구제),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6장(통관 및 무역 원활화)을 제외한 이 장 및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⁸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나.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 또는

다.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의 보장

이러한 조치가 이 예외가 적용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2. 이 장 또는 제7-가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7-나장(투자), 제7-마장(통신) 또는 제7-바장(디지털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정책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 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제7가.9조(지불 및 송금) 또는 제7나.10조(송금)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7가.9조(지불 및 송금) 및 제7나.10조(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이나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이나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⁸ 양 당사국은 이는 지급, 결제 및 청산 제도의 안전성과 금융 및 운영상 완전성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7라.12조

투명성

1. 제11다.5조(공공 협의), 제12.3조(공표) 및 제12.4조(질의처 및 접촉선)는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투명한 조치가 서로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서로의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3. 각 당사국은

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나. 이 장이 적용되는,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다. 가능한 범위에서,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의 사전 공표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한다.

라.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답하기 위한 질의처 및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마. 가능한 범위에서,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최종 공포와 그 규정의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한다. 그리고

바. 이 장이 적용되는,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포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⁹

5.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인가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규제당국이 인가가 요구되는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운영할 것¹⁰

나. 그러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¹¹

다. 인가를 위한 절차가 공정하고,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러한 의견을 집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¹⁰ 이 규정은 특정한 행정 조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¹¹ 그러한 기준은 당사국의 규제 요건에 합치되는 방식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금융규제당국은 각 기준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라. 인가를 위한 절차가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마. 그러한 조치가 남녀를 차별하지 않을 것¹²

6.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인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은

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인가를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한 정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 1) 요건 및 절차
- 2) 금융규제당국의 연락처
- 3) 수수료
- 4)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를 위한 절차
- 5) 면허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 6) 공청회 또는 의견을 통한 것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다.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

¹²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등 대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한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임시 특별 조치의 채택은 이 규정의 목적상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료된 신청에 대하여 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4개월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 라.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의 제출을 허용한다. 특정 신청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금융규제당국은 신청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한다.
- 마. 상충하는 우선순위 및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전자적 형식의 신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바. 인가 절차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원본 문서 대신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인증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 사. 당국이 부과하는 인가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수료표 또는 수수료 금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그 수수료를 이 장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가 신청의 처리상황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린다.
- 자.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리를 위하여 완료되었다고 간주되는 신청의 경우,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될 것,¹³ 그리고

¹³ 금융규제당국은 신청이 “처리를 위하여 완료되었다” 고 간주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가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¹⁴에 관한 결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¹⁵으로 신청인에게 알릴 것

차.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불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 1) 신청이 불완전함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 2)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이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 3) 신청인에게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¹⁶를 제공하고, 요구되는 추가 정보에 대한 마감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마감시한을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1목부터 3목까지의 조치 중 어떠한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지도록 보장한다.

카. 신청이 거부된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 거부 사유와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의 재제출 절차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신청인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다른 수정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인가가 일단 부여되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한다.¹⁷

¹⁴ 금융규제당국은 신청의 제출일부터 특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나타낸다는 것을, 공표된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림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¹⁵ “서면으로”는 전자적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¹⁶ 그러한 기회는 금융규제당국에 마감시한 연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¹⁷ 금융규제당국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유로 발생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라.13조

자율규제기구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때 특혜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요구하는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7라.3조 및 제7라.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7라.14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제7라.15조

건전성 조치의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서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¹⁸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¹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라.4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에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3.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라.16조

후선업무 기능의 수행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의 후선업무 기능을 그 금융기관의 본점이나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자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본점이나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당사국은 금융기관이 그러한 기능에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편, 금융기관은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자의적인 요건의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에 국내 법적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7라.17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7라-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7라.18조

제도적 사항

1. 제7가.11조(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의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금융서비스 작업반은 부속서 7라-다¹⁹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인 각 당사국의 수석대표를 포함한다.

2. 금융서비스 작업반은

가. 이 장의 이행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나.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7라.21조에 따라 투자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3. 금융서비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대로 회합할 수 있다. 회의는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대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7라.19조

협의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작업반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¹⁹ 영국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자국의 국내 금융규제당국의 대표를 금융서비스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제7라.10조제1항가호2목에 언급된 지역정부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지역정부의 모든 비합치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응하고 그러한 요청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가 적용하는 비합치 조치가 금융기관, 투자자,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무역 또는 투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3.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7라-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금융규제당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자국의 법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 간 협정 또는 약정의 요건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집행 사안에 방해될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규제당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라.20조

금융서비스 분쟁해결

1. 제14장(분쟁해결)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제14.18조(중재인 명부) 제2항 및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에 규정된 요건에 더하여, 이 장에

서 발생하는 분쟁에 임명되는 모든 중재인이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제15.1조(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는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에 따라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러할 의지가 있는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국은 각각 개인 5인을 추천하고, 양 당사국은 또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제2항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다.

4. 패널위원들이 제14.5조(중재패널 설치) 제3항, 제14.9조(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제3항, 제14.10조(중재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제3항,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 제5항, 제14.12조(의무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제3항,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의 제6조(교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선정되는 때, 선정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이루어진다.

5.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또는

나.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부속서 7라-나의 제4절, 제5절 및 제6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7라.21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이 장의 적용범위 내의 조치와 관련하여 제7-나장(투자)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와 사무총장은 중재판정부에 중재인을 임명할 때 제7나.24조(중재인의 선정) 제5항가호에 기술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고려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정 후보자의 전문성 또는 경험은 의장 중재인을 임명할 때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된다.

2.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7-나장(투자)의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7라.11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제7-나장(투자)의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내에, 피청구국은 제7라.11조가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서면으로 금융서비스 작업반에 제출한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중재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중재는 그 청구에 대하여 라호에 규정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작업반은 가호에 기술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모든 그러한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 금융서비스 작업반이 가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금융서비스 작업반이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 청구인의 당사국이 제7라.11조가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 제7-나장(투자)의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중재의 목적상,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7라.11조에 대한 피청구국의 입장과 불

합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라. 청구에 대하여, 가호에 언급된 중재는

- 1)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가, 금융서비스 작업반의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후, 또는
- 2) 다호에서 금융서비스 작업반에 주어진 120일 기간의 만료부터 10일 후 진행될 수 있다.

마. 중재판정부는 금융서비스 작업반이 제3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제7라.11조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추론도 하지 않는다.

3. 제7나.2조(정의)에 규정된 다음 용어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조에 통합된다: 청구인, 분쟁 당사자들, 분쟁 당사자, 피청구국 및 사무총장.

부속서 7라-가
국경 간 무역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7라.6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7라.2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²⁰, 위험평가²¹,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7라.2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7라.6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²⁰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제품 개발 전략에 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²¹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스에 대하여 제7라.2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3. 제7라.6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²²

나. 제7라.2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나호11목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7라.2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나호12목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²³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서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영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²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²³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자문을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한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고, 부수 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나호1목부터 11목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영국의 약속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모든 제한을 조건으로, 제7라.6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7라.2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 및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²⁴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 3) 신용 및 보증
- 4) 육상운송수단
- 5) 화재 및 자연재해
- 6) 재산에 대한 그 밖의 손해
- 7) 자동차 배상책임. 다만,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법상 인가된 보험업자에 의하여 가입되어야 하는 배상책임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 8) 일반 배상책임
- 9) 각종 금전적 손실
- 10) 보험조건 차이 및 보상한도 차이. 다만, 복수의 관할권에 걸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업자가 발행한 마스터보험증권에 따라 보험

²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가호3목부터 10목까지에 언급된 범주의 보험활동은 공급자가 그 보험사업을 전적으로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약속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조건 차이 및 보상한도 차이의 보장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제7라.2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가호3목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1목 및 가호2목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제7라.2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가호4목에 기술된 보험 부수 서비스

2. 제1항은 제1항가호3목부터 10목까지에 기재된 서비스의 공급자가 소매고객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이 부속서에서 영국의 경우, “소매고객”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자연인, 또는

나. 「2006년 회사법」 제465조제3항에 명시된 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4. 영국의 약속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모든 제한을 조건으로, 제7라.6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7라.2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 및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제7라.2조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의 정의 나호11목에 기술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나. 제7라.2조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의 정의 나호12목에 기술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다만, 이 호에 기술된 중개는 제외한다.

부속서 7라-나
구체적 약속

제1절
포트폴리오 운용

한국

1. 한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신탁회사 제외)이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실행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약속은 제7라.3조 및 제7라.6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한국 원화표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은 일단 한국 원화표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3. 제1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9조제18항제6호까지에 정의된 집합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를 말한다.

영국

1. 영국은 한국의 금융기관이 영국에 소재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가. 신탁 서비스, 그리고

- 나. 보관 서비스²⁵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실행 서비스
2. 제1항은 제7라.3조 및 제7라.6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영국의 경우 제1항에서 한 약속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 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제235조에 정의된 집합투자기구, 또는
- 나. 「2013년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규정」 규정 3에 정의된 대체투자펀드

제2절 손해보험

부속서 7라-가에 한국이 명시한 서비스에 더하여, 한국은 다음의 경우, 손해보험에 대하여 제7라.2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한다.

- 가. 한국에서 제공되는 보험의 유형에 대하여 신청인이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경우, 또는
- 나.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보험의 유형에 대하여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항은 「보험업법」 제3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를 조건으로 한다.

제3절 금융정보 및 데이터

²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관 서비스는 영국에 소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탁기관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이 부속서에 따라 영국이 한 구체적 약속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 및 금융서비스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정보 이전이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그러한 정보 이전(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의 이전 포함)을 제한하지 않는다.

3.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서비스 컴퓨터 설비를 사용할 것 또는 그 영역에 컴퓨터 설비를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²⁶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 또는 금융서비스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5. 한국의 경우,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을 이행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2. 5.) 제11조제1항 및

²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금지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정보의 그러한 이용,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하여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제14조의2제7항에 명시된 규정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규정의 개정이 제3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데이터, 개인 사생활 및 개인의 기록과 계정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감독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금융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5절

금융의 다양성

1. 양 당사국은 성별 균형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산업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러한 다양성이 균형 있는 의사결정, 소비자, 직장문화, 투자 및 경쟁적인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도록 노력한

다. 다양성은 성별, 민족 및 직업적 · 교육적 배경을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의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6절 지속가능금융

1. 양 당사국은 투자 의사결정 및 그 밖의 사업활동에 환경적, 사회적 및 지배구조 고려사항의 포함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투자 의사결정 및 그 밖의 사업활동에 환경적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평가와 가격 산정, 그리고 환경 및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와 기반시설의 모색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국제포럼에서의 이니셔티브에 맞게,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미래에 축정보를 포함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G20 수준에서의 것을 포함하여, 투자 의사결정 및 그 밖의 사업활동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및 지배구조 고려사항의 포함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부속서 7라-다
금융서비스 작업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영국의 경우, 재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